

## 제37회 육운의 날 유공자 포상 추천 공고

제37회 육운의 날을 기념하여 육운 산업발전에 공헌한 유공자와 단체를 폭넓게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 1 추진배경

제37회 육운의 날을 맞아 육운산업 발전에 공헌한 경영자, 임·직원, 단체 및 종사자 등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

#### 제37회 육운의 날 개요

- ◆ (時 · 所) '23. 11. 14(화) / JW메리어트호텔(잠정)
- ◆ (주관/후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국토교통부
- ◆ (참석자) 장관님, 국회의원, 버스·택시·화물·정비 연합회 등  
육운종사자 400여명
- ◆ (주요행사) 육운의 날(육상교통 진흥 유공) 시상, 결의문 선포 등

### 2 포상규모(안)

☞ **총210명(계획)** ※ 정부포상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규모 결정 예정

정 부 포 상					장관표창	총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소계		
2	3	4	7	16	194	210

### 3 선발범위

- 자동차운수사업,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의 경영자, 임·직원 및 종사자
  - \* 운수업의 경우 여객·화물 운송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육운분야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 육운분야 노동조합연맹 노조원 및 NGO 등 교통단체
- 육운행정담당 교통관련 경찰 공무원

### 4 대상자 추천(유형)

- 경영혁신, 서비스개선 등으로 육운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
- 코로나19 방역 등에 노력하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육운 업무발전에 기여한 자
- 노사분규 예방 및 노사합의로 무분규산업체로 이끌어 내는데 기여한 자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편의 증진 등에 기여한 자
- 교통발전에 관한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자

### 5 추천기준

- ◆ 당해 공적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된 자

#### 가. 일반기준

-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 표창 규정」, 2023년도 정부 포상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 나. 자격기준(추천일 기준)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개인
- 포장은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개인
-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
- 장관표창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추천 시 유의사항>

1. 육운분야 직접 종사자(운전자, 업체 운영 등) 위주로 포상하고 관련 단체 일반사무 종사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포상
2. 여객·화물 운송업체 경영자, 소속직원의 경우 운송실적(22.6.1~'23.5.31)이 있는 업체에서만 포상대상자 추천  
\* 화물운송실적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go.kr)에서 실적등록자료 출력 제출
3. 정부포상·장관표창 공히 심사회의 결과 등 공적심사 증빙자료(회의록 포함) 반드시 제출
4. 정부포상은 우리부 공적심사 결과대로 수상할 의사가 있는 자에 한하여 추천 요망(수상자가 원하는 훈격 보다 낮은 등급의 포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수상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해당 소속단체에 정부포상 배정 제외)
5. 포상 후보자에 대해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상 후 취소될 수 있으므로 **포상 후보자로 반드시 흠이 없는 사람을 추천해야 함**
6.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서는 정부포상과 관련하여 본 지침을 위배하는 자체 규정을 제정하지 않도록 함.  
※ 부적정한 기준(예시) : 나이, 출자금·회비·찬조금 납부 실적(여부), 노부모 부양여부, 거주기간(여부) 등을 선발기준에 포함하거나 기수상·형벌 등 추천 제한기간 경과자 등을 선발대상에서 제외
7. 과거 협회 또는 단체 등에서 단수 추천 후, 범죄이력조회 등 과정에서 추천 제한 사항에 해당되어 포상대상자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협회 또는 단체는 복수 추천할 수 있음**

## 다. 재포상(표창) 금지 및 포상 제한

### ○ 정부포상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 장관표창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라. 추천 제한 : 「붙임1, 2(추천 제한)」 참조

※ 기타 세부기준은 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에 따름

6

## 추천인원

- 정부포상 : 각 단체 등은 공적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대상자를 추천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 각 단체 등은 공적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추천

## 추천 절차

- 사업경영자 및 종사자 등
  - 업종별 해당 시·도 조합에서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 연합회에서 종합·심의하여 추천(심의위원회 반드시 개최)
    - 버스·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화물·렌터카연합회에서는 공제 조합 임·직원도 포함 추천 가능
- 기타 노동조합원·공무원·자율단체는 해당 기관(부서)에서 추천
- 각 추천단체는 공문 시달과 더불어 자체 내부 인터넷 등을 통한 대상자 공모로 참여 확대
- 포상 및 표창대상자 추천 시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하여 각 후보자별 사전 동의 필요
- 꼭 받을 만한 사람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대상자를 엄정하게 선정(연공서열이나 나눠 먹기식 포상 지양)
- 정부포상추천 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 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수렴

## 행정사항

### 가.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3. 5. 8(월) ~ 2023. 6. 2(금)**
- 제출처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공문 제출)**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 전화번호 : 044-201-3793(담당자 : 김민진 주무관)
  - E-메일 : rik3840@korea.kr

- 단체별로 정부포상 대상자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대상자를 구분 작성
- **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공적조서 작성 시 다른 소속 등의 공적을 함께 추천하고자 할 경우 당해 기관 또는 책임자의 사실증명 등 첨부
- 제출된 자료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행정기관·공공기관**) 전자문서로 제출(원본 별도송부)
- (**민간단체**) 제출 서류의 파일을 모두(한글파일, 엑셀파일 모두) 메일로 우선 제출하고 원본 서류는 우편 등으로 제출
  - \* 날인·직인이 있는 서류는 스캔파일도 메일로 송부

### 나. 유의사항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함(정부포상만 해당, 장관표창 제외)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표창)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이력서 등 허위기재 및 누락, 위조 및 변조는 추천 기관 책임
- 재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기타 세부기준은 “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에 의함

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추천대상자의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②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1부[별지 제3호 서식]

- 기관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로 작성

④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 공적요약 1부[별지 제4호 서식]

-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띠어쓰기에 맞게 작성

⑤ 공적조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공적조서는 반드시 **불임** 서식 사용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지자체	민간 기관(단체)
조사자	소관과장	소관부서장
추천관	자치단체장	기관장, 단체장

\* 반드시 표·그림은 제외하고 2,000자 이상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

⑥ 공무원은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원본대조필) 1부[별지 제6호 서식]

⑦ 운전기사 및 임·직원은 소속회사·단체장이 확인한 **증빙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1부, 운전기사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청 발급)

⑧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 내용(별지 제8호 서식)

\*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등) 등에 필요하므로 핵심 공적사항을 정확히 기재

⑨ 정부포상 추천제한 해당여부 조회자료 1부(별첨 엑셀파일 제9호 서식)

⑩ 단체현황 및 자체점검표 1부(별첨 엑셀파일 제10호 서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⑪ 공적심사결과 및 회의록 사본 1부(정부포상·장관표창 공통)

\* 정부포상(총리이상)은 ①~⑪, 장관표창은 ①~⑦, ⑩~⑪ 제출

## ○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미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회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 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 단체

-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제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동 지침 22~25쪽 참고)
-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 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 공무원

-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일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  
과 관련한 의무 위반

##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 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 ② 중요비위(금품 · 향응수수, 공금횡령 · 유용 등)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 ②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단, 재직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제한  
(퇴직포상 취지와 상훈의 영예성 유지를 위해 사면 · 말소된 징계건도 합산함)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제,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제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 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식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파주천안 작성용)

인적사항

성명		추천자격	국토교통부장관표창
소속(주소)		직위(급)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추천제한여부 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성명

(서명)

##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은 구분 작성**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00명)

연번	추천단체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추천자격 (재직기간)	비고
1	한국00협회	(주)00교통	00	홍길동 (洪吉童) 00.00.00	00훈장/산업 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 리표창 (00년00월)	남 또는 여
2	한국00협회	(주)00운수	00	성춘향 (成春香) 00.00.00	0000 (00년00월)	남 또는 여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00명)

연번	추천단체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추천자격 (재직기간)	비고
1	한국00협회	(주)00교통	00	홍길동 (洪吉童) 00.00.00	장관표창 (00년00월)	남 또는 여
2	한국00협회	(주)00운수	00	성춘향 (成春香) 00.00.00	장관표창 (00년00월)	남 또는 여
3						
.						
.						

##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 공적요약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은 구분 작성

### □ 정부포상 대상자 공적요약 (00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수공 기간	추천 훈격	징계 기서 훈	공적개요 (육하원칙에 의거 70자 이내)
1	주00자동 차남동정 비사업소	부장	서○○ (徐○○) 68.07.01	00년 05월	국무총 리표창	00광역 시장표 창 ('00.12)	운행 차량 무료 안전점검, 경영자 및 정 비 종사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정 비제도 개선과 원가절감 방안 마련 등 정비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함
2	000버스 운송사업 조합연합 회	이사장	서○○ (徐○○) 68.07.01	00년 05월	장관 표창	-	-마스크, 소독제 배포 등 코로나 방역 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마을버스 운행 정보, 승차대기, 무정차 시스템 구축 등 지역 주민과 승객 편의 제공 등에 기여함
							<p><b>&lt;주의사항&gt;</b></p> <p>1. 서식, 글자크기 등 변형 금지</p> <p>2. 줄바꿈시 엔터키 대신, 반드시 스페 이스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문단 위 간격이 5point로 설정되었 기 때문에 엔터키를 사용할 경우 줄간 격이 일정치 않게 됩니다.</p>

### □ 장관표창 대상자 공적요약 (00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재직 기간	추천 훈격	징계 기서 훈	공적개요 (육하원칙에 의거 70자 이내)
1	00개인 용달화 물협회	과장	오○○ (吳○○) 72.09.24	12년 03월	산업 포장	-	-화물차 안전장치 점검과 자가용 유상 운송 단속 등 정부 행정조치 등에 적 극 협력하고 정부 위탁업무 5천여 건 을 대행 처리하는 등 관련 시책에 기 여함

## 공적조서(개인용)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 기재 불가)		
직업	소속	소속은 부서단위까지 기재	
직위	직급 · 계급	법정(공식) 명칭	
추천훈격	00훈장/ 대통령표창/ 장관표창 등	추천순위	
공적분야	공적기간 1)	○년 ○월 예) 23년 5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p>* 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70자 이내)</li> <li>-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li> <li>-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li> <li>- 공적요지는 "~에 기여함"으로 끝맺도록 작성</li> </ul>			
조사자2)			
소속			
직위(직급 ·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천관3) 직위 성명

관인

210mm × 297mm [백상지 80g/m<sup>2</sup>]

1) 공적기간은 '포상 주첨일' 기준으로 작성(15일 이상 반올림)

2) 조사자는 반드시 부서장 이상으로 작성

3) 추천관은 추천기관 기관장

(뒤 쪽)	
주요 경력	
시작연월~종료연월	이력사항
2012.01.01~2013.12.31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명
2017.01.01.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b>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요청</b>	
<p>※ 공적 내용 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서술식으로 작성할 것(개조식 X))</li> <li>-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 위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지양</li> <li>- 문장 중간에 줄바꾸기(enter 키 입력) 금지</li> </ul> </li> <li>○ (작성 분량) 공적내용은 표, 그림을 제외하고 <b>최소 2,000자 이상</b>이 되도록 작성</li> <li>○ (작성 서식) 글자크기 12p, 정평 100, 자간 0, 글꼴 신명조로 작성</li> </ul>	
<p>※ 참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은 공적조사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li> <li>○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하지 않음</li> </ul>	

##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 ※ 공무원일 경우 제출

1) 소속기관	2) 직위	3) 직급			
4) 성명	한글	5) 생년월일	(만 세)		
	한자	6) 군번(군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직자 <input type="checkbox"/> 정년퇴직 <input type="checkbox"/> 명예퇴직 <input type="checkbox"/> 의원면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 특정직 ~ (년 월 일)		
8) 일반직		~ (년 월)	13) 교원 ~ (년 월 일)		
9) 별정직		~ (년 월)	14) 군인 ~ (년 월 일)		
10) 기능직		~ (년 월)	15) 군무원 ~ (년 월 일)		
11) 고용직		~ (년 월)	16) 기타(~) ~ (년 월 일)		
합계 ①		년 월 일			
17) 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계 ④		년 월 일			
18) 실재직기간(②-④)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 징계, 형벌	종류	일자	21) 과거표창	포상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모범총리표창)		
22) 작성자(인사담당자)			23) 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24) 기관명 :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 「육운진흥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천인	성명* (단체명)		관계* (과/부처)	(과/부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직업)	
	전화*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 《 추천서 유의사항 》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천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별지 제8호 서식]

## 「육운진흥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내용

훈격	2023년		
	성명 (나이)	소속·직위 (수공기간)	주요 공적
산업 포장	홍길동 (57세)	㈜00 대표이사 (37년 1월)	<p><b>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요청</b></p> <p>• '77년부터 37년간 육운산업에 종사하며 .....하는 등 육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p> <p>• 특허 .....(구체적 공적 적시).</p>
대표			
대표			
국표			
국표			